

대전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2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29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합10640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유한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수

변론 종결 2020. 5. 26.

판결 선고 2020. 6. 1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합1064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유한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접수 제122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유한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정정미

판사이호재

별지